

부산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가단3238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와 C 사이에 2/9 지분에 관하여 2008. 9. 5.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2/9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0년 6월 26.일 접수 제188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도구청,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08. 9. 5.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는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0년 6월 26.일 접수 제188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8. 9. 5.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법률행위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거 그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의 판단기준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28826 판결).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피고 등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여 C의 상속지분을 포함하여 피고 단독 소유로 상속재산을 분할 협의한 날은 2020. 6. 23.임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4. 4.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등기원인에 적힌

2008. 9.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은 상속의 효과가 발생한 날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8. 9. 5. 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D 채무조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이 D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여 원고와 사이에 채무조정 합의를 하고 합의 내용에 따라 분할 변제 약정을 이행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D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93831 판결).

C은 2024. 3. 14. D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여 원고와 C 사이에 채무 원리금 합계액을 감경하고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채무조정내역이 2024. 5. 22.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와 C 사이의 개인채무조정안이 확정되어 채권의 액수가 조정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한다거나 채권 행사가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없고,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은 채무자인 C 본인이 아닌 수익자인 피고로서 이 사건 개인채무조정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제척기간 내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최용호

별지